

01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 완화(업종 규제의 네거티브화)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산업단지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등 공장을 영위하는 입주업체 외에도 이러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시설(ex: 금융, 의료시설 등의 편의시설)’도 함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에서는 산업단지 내 시설에 대해 입주 가능한 업종을 열거형으로 명시해왔습니다. 즉,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산업단지 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다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그 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공장) 중심이다 보니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복지시설(지원시설)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또한,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의 업종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를 현실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이들이 불편을 호소해왔고, 특히 청년들이 산업단지 내 취업을 기피하는 요



인 중 하나로 이러한 편의·복지시설의 부족이 지적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단은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의 입주자격을 ‘네거티브 업종규제방식’으로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산업부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시설로 카지노, 유흥주점처럼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화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로써 산업단지 내 PC방, 야외극장, 펍(Pub), 사우나 등 다양한 여가시설 및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진입장벽이 제거되어 근로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

은 매력적인 일터로 만들어가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진입장벽이 제거되어 근로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 조성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에 지원시설은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음(열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에 명시된 제외 업종 외의 모든 업종이 원칙적으로 지원시설로 입주가능(네거티브형)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산업부, '19.9월)

02

신의료기술 보험 수가 조기 검토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함께 시작합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2018년 기준)는 6조 8,179 억원으로 '17년(6조 1,978억원)에 비해 10.0% 성장 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도 7.1%로 성장 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매년 시장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3D프린팅의 첨단 ICT 와 융합하면서 새로운 기기와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 시장규모(억원) : ('14)50,199 → ('15)52,656 → ('16)58,732
→ ('17)61,978 → ('18)68,179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가 시장에 출시되어 환자 에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수가 결정을 최종적 으로 받아야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요양급여 등재)은 법령에 따라 ① 의료기기 허가(80일, 식 품의약품안전처) → ②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판단(30~60일,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 ③ 신의료기술평가(140~250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④ 보험 급여 등재(10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잡한 규제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 록 정하고 있어 의료기기가 개발 후 최종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 너무 많 은 기간(최대 490일)이 소요돼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시점에는 더 이상 신개발 의료기기(기술)이 아니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추진단은 신속한 시장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처 인허가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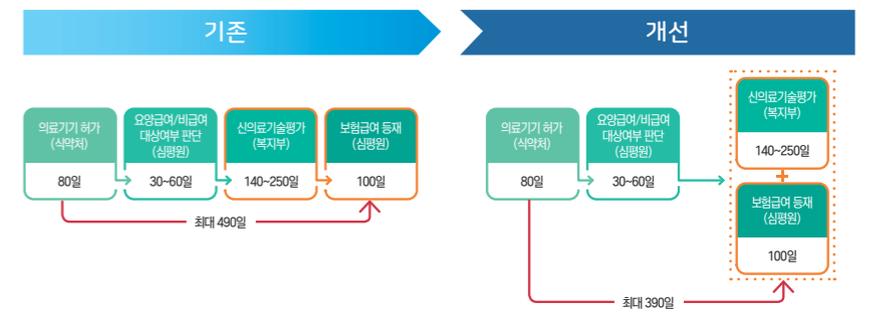


후, 신의료기술평가 시 건강보험 급여여부, 수가 수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하였고,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사 를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내에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기존 순차 진행 시 발생했던 보험등재 심사기간(최대 100일) 만큼을 단축하게 되었 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등재심사가 동시 진행됨에 따라 신개발 의료기기 및 기술들의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경영실적 개선, 신의료 기 술에 대한 개발의욕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아울러 기업들의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 및 국내 제품에 대한 신뢰 증가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 출 및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 및 국내 제품에 대한 신뢰 증가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 출 및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의료 기술평가의 결과가 고시된 이후에 요양급여대 상여부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었음 - 신의료기술 보험등재까지 소요기간 : 최대 49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면서 관련 비용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 의 결정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 신의료기술 보험등재까지 소요기간 : 최대 390일(최대 100일 단축) <p>「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복지부, '19.7월)</p>



0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건강기능식품 영업소에 대한 중복 현장점검이 사라집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신규 영업신고 건수는 '14년 5,300건, '15년 5,061건, '16년 6,544건, '17년 9,992건, '18년 13,1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매출액 역시 '14년 16,310억원, '15년 18,230억원, '16년 21,260억원, '17년 22,374억원, '18년 25,221억원으로 연 평균 11.6%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매년 시장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출입·검사가 가능함에도 검사의 필요 여부와 상관없이 위반 사항이 없는 정상적인 신규 영업소에 대해서까지 6개월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영업소를 출입하여 판매시설, 창고 등 보관시설을 점검하고, 검사에 필요한 샘플 무상수거,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서류를 강제로 검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복 검사는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신규 창업자의 시장진입을 위축시키고 국민 경제활동에도 지장을 주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수입식품특별법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타법에서는 6개월 이내 강제점검 규정이 없음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해서만 강제검사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업계에서는 이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추진단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영업소에 대한 현장 검사 등은 필요하지만, 위반 사항이 없는 영업소에 대해서까지 6개월 내 강제 점검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하여 현행규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신규업소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소에 대한 현장 출입·검사 면제 규제개선 조치로 신규 창업자의 부담 감소와 그로 인한 영업활동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신규 창업자의 부담 감소와 그로 인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활동 활성화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기능식품 영업소 출입·검사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영업신고 후 6개월 내 출입·검사 의무(중복 규제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출입·검사 의무 규정 삭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19.12월)

“ 안전성에 관리하고 있는 제품인데도 신규 판매업소는 6개월내 의무적으로 검사받니 영업자로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




신규 업소 의무 점검 면제
신규 창업자 부담 감소
영업활동 활성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현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신규 판매업소 (6개월내 의무점검대상)	5,300	5,061	6,544	9,882	13,134
전체 판매업소	97,580	94,691	95,305	88,834	86,380

04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대상 확대

주류도매업자의 신용보증기금 대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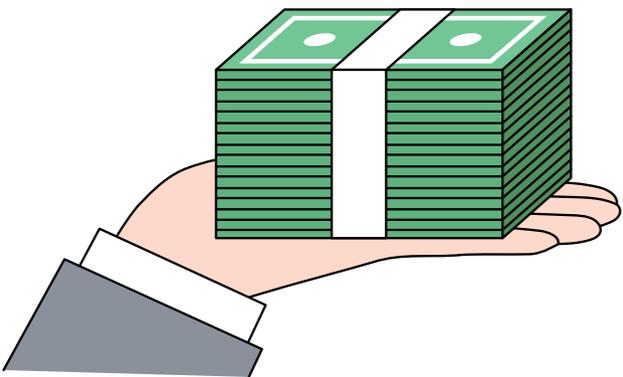
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류도매업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류산업은 시장규모 2,000조원, 평균영업이익률 20%의 대표적인 글로벌 고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스키나 독일의 맥주, 일본의 사케처럼 한 국가의 식문화를 대변하는 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어서, 여타 선진국들도 생산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올바른 주류소비를 위한 소비자 교육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 주류산업은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는 불건전업종, 국민경제활성에 기여도가 낮은 업종으로 분류되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업무방법서」에도 '재보증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어 대부분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주류도매업자는 국가에서 허가된 공인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를 받지 못하여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우리 추진단은 주류도매업이 도박·향락과 같이 경제를 교란하는 불건전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업계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 위주이기 때문에 기존의 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제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에 대한 규제개선 취지에 크게 공감하였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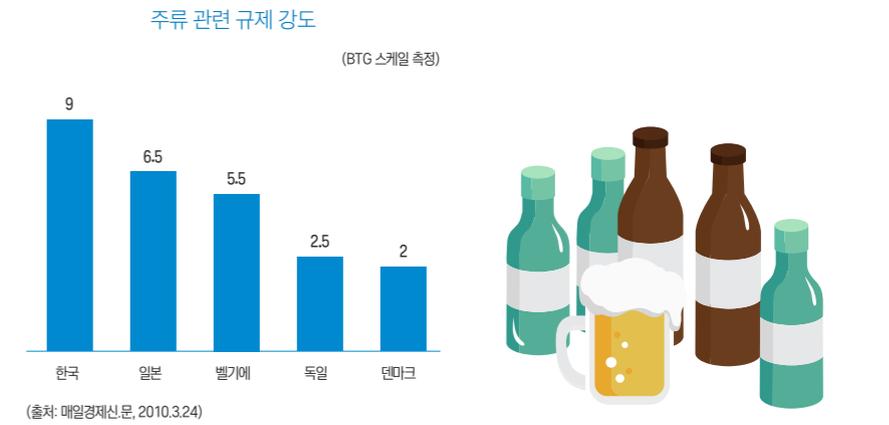


운영위원회에서 재보증제한업종 개정이 의결되어, 앞으로는 주류도매업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8억원 가량 재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지역주류도매업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자부담으로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지원을 해준다면 업체를 운영하는 데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주류산업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주류도매업의 운전자금을 적시 공급하여 경기침체시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주류 도·소매업 등 전반적 주류산업의 활성화 기대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류도매업이 '재보증제한업종'으로 지정되어 주류도매업자의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류도매업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재보증 제한업종'에서 제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방법서」 개정 (중기부, '19.9월)



05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대상 채무조정제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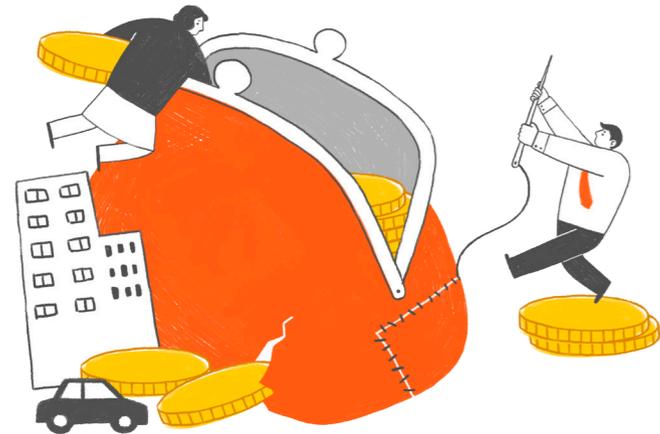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일정기간(30일 초과)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연체발생 이전이나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연체 30일 이전에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추진단은 금융위에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고, 금융위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상환능력 감소로 30일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상환능력이 회복되어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황곤란자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였습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없었던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및 연체우려가 존재하는 구조적 상황 곤란 채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완비하여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인 연체 30일 이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채무자 재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인 연체 30일 이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채무자 재기 지원 효과를 극대화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체 30일 이하인 채무자의 경우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간 긴급상환유예를 부여하고, 상환능력이 회복되어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황곤란자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 <p>「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금융위, '19.9월)</p>

연체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라인업’

신설	연체 전 ~ 연체 30일	연체 30일 ~ 연체 90일		
	<p>연체 위기가 시작될 때 신속하게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상환유예(6개월) 분할상환(10년) 	<p>연체가 더 길어지기 전에 희생가능성 UP “프리워크아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체이자 면제 및 금리감면 (최대 50%) 분할상환(10년) 		
신설	상환불능	연체 90일 ~ 상각 전/후		
	<p>상환능력을 잃어버린 취약계층은 상환의지만 보여주면 “채무 면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금감면을 우대(70~90%) 3년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p>길어진 연체는 상환능력에 맞춰 줄여주는 “채무정리 지원”</p> <table border="0"> <tr> <td> <p>상각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금감면 신설 (0~30% 감면) </td> <td> <p>상각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금감면폭 확대 (20~70% 자영업자 최대 5%p 우대) </td> </tr> </table>	<p>상각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금감면 신설 (0~30% 감면) 	<p>상각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금감면폭 확대 (20~70% 자영업자 최대 5%p 우대)
<p>상각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금감면 신설 (0~30% 감면) 	<p>상각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금감면폭 확대 (20~70% 자영업자 최대 5%p 우대) 			

06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소유 허용

금융기관도 핀테크기업의 소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 기술·산업(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용자·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모델」의 수용 여부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융 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 소유에 대하여는 제한이 있는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핀테크기업 등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핀테크기업을 인수하여 디지털 신기술을 수용하고 플랫폼 경쟁 중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의 소유가 불명확함으로써 이러한 추세에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추진단은 금융위에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고, 금융위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회의 운영과 함께 핀테크 기업 출자제한 완화 및 국내·외 핀테크 동향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19.6.27 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를 포함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에 맞춰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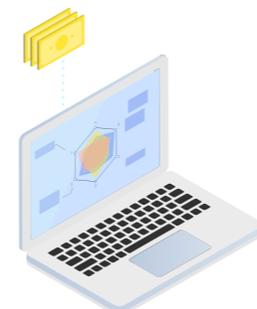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 '19.9.4일, 시행 '19.10.8일)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Negative 방식으로 확대 (新기술법제도 반영)
- 핀테크 업종에 대해 개별법 상 제한이 없는 한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 제시
- 핀테크 투자 실패시 고의·중과실 없으면 제재 감경면책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의 소유가 허용됨으로써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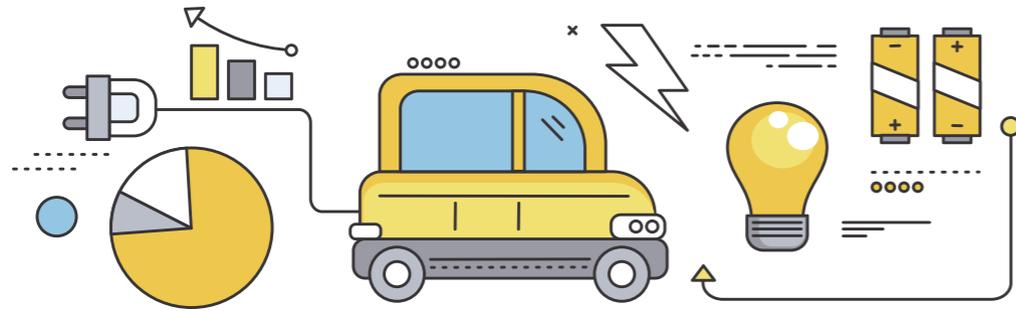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밀접(직접)관련 업종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출자 가능 → 다만, 그 범위가 불확실 • '15.5월 유권해석시 이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업만 인정 [Positive 방식] ② 최근 제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지 못함 •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부수업무 영위 가능 → 핀테크 업무 영위 불확실 •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가능하지 여부 불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기술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 기업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 금융업 수행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S/W 개발 및 공급업 등) ② [법·제도 반영]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을 포함 ③ 그 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 [Negative 방식] •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 제시* <p>* 다만, 경영건전성·이용자 보호·금융시장 안정성 저해되는 경우 제한하며, 핀테크 투자 실패시에도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 감경·면책</p> <p>「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 '19.9월)</p>



07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허용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이 가능해진다!



최근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진보 등으로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중 초소형 전기차는 미래교통과 이동수단 분야로서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해 신산업성장이 가능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9만대 정도로 추정되는 전세계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2025년이 되면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연간 90만대 이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도 2017년 도입되어 2019년말 5000여대가 넘게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정부로부터 튜닝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인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튜닝 허용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추진단은 충북지역 규제혁신 간담회('19.2.28)를 통해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특례를 인정받은 초소형 자동차에 대해서 튜닝 사전승인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초소형 자동차의 안전기준'이 '19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튜닝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초소형 전기차 튜닝 허용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모호한 기준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초소형 전기차 및 튜닝 산업은 자동차 분야의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로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업계의 투자 여건 개선과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전기차업계의 투자 여건 개선과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국내 안전기준이 없어 튜닝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안전기준 시행일('19.7월) 전초소형 전기자동차 기준적용 특례 시 적용된 외국의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튜닝 허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유권해석 (국토부, '19.2월)

<초소형 전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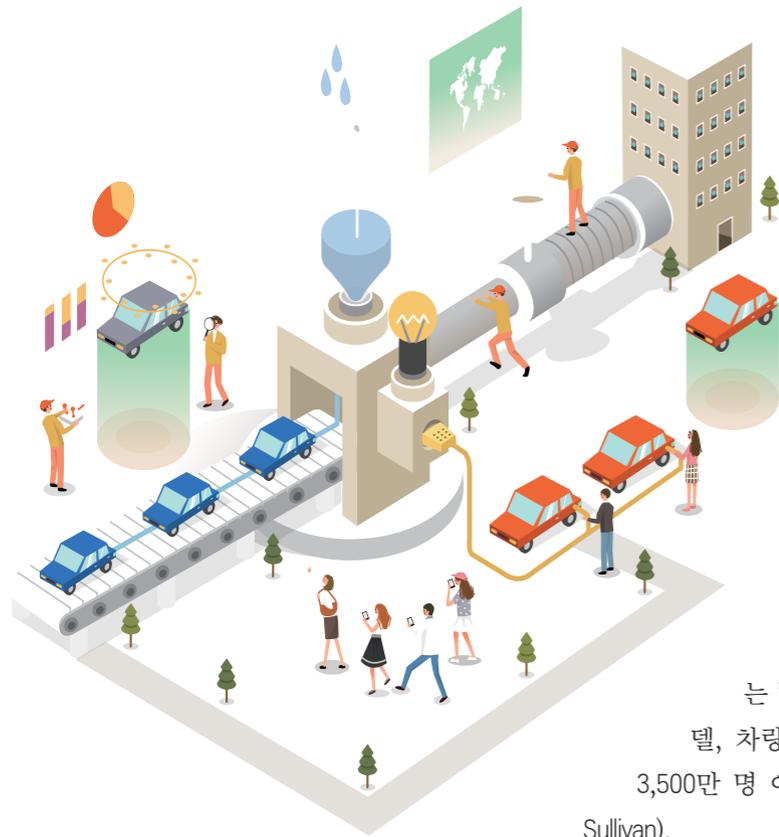
<초소형 전기차 튜닝>



08

초소형자동차 1회 충전주행거리 평가규정 개선

초소형자동차의 불합리한 주행거리 시험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초소형자동차(Micro Mobility)는 일반적으로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하여 근거리나 중거리 이하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0년도 기준 출근시간대 차량의 86.3% 정도가 1인 차량이고, 도심주차 및 교통정체 등으로 발생하는 도심 혼잡비용이 28.5조 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국회입법조사처). 초소형자동차의 전 세계 시장규모는 '20년까지 약 135개 이상의 모델, 차량수 50만대 이상, 이용자 수 3,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Frost & Sullivan).

자동차관리법상 초소형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h 이하로 제한되어 고속도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 측정시험에서 고속도로 주행모드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주행시험의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초소형자동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추진단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하였으며, 환경부는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시 고속도로 주행모드 시험항목을 폐지하고 도심주행모드만 시행하도록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환경부고시 제 2019-133호, 2019.8.1.).

불합리한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초소형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초소형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초소형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초소형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적용 *상온 60km 이상 (도심주행모드와 고속도로 주행모드 측정결과 모두 반영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별도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적용 *일반 전기승용차는 상온 120km 이상, 초소형전기승용차는 상온 도심주행거리 60km 이상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환경부, '19, 8월)

초소형 전기차 시장 규모



09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마련

국내 콘텐츠기업(CP)의 성장 걸림돌을 제거했습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사가 상호접속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 이용자는 한 통신사에 가입하면 전 세계의 콘텐츠 또는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들과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통신사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를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하여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05년~) 정하고 습니다. 한편, CP*(포털, OTT 등)는 통신사와 망 이용계약(소매)을 체결하며, 망 이용대가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신사와 CP 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 CP(Contents Provider) : 인터넷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제작하는 업체

지난 '16년, 정부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전반을 개편하였습니다. 대형 통신사(KT·SKB·LGU+)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따른 상호정산방식으로 제도 개편 하자,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접속료가 CP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의 경쟁이 위축되는 현상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추진단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대형 통신사(KT·SKB·LGU+)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의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한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현행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의 최대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1:1.8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 간 월별 트래픽 교환비율은 모두 1:1.5를 하회하며, 무정산구간이 1:1.8로 설정되면 통신사가 타 사로 발신하는 트래픽이 상당수준



늘더라도 접속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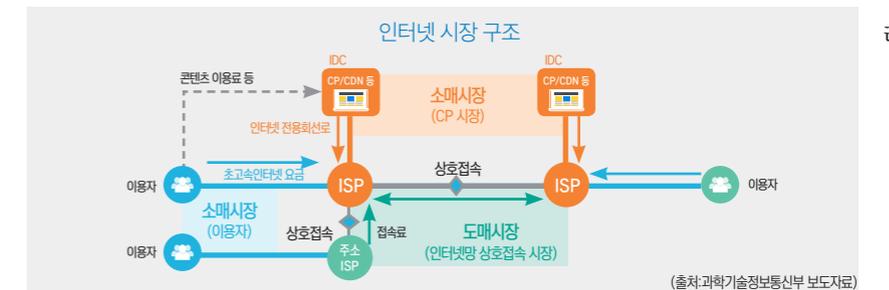
이와 함께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CATV社 등)의 접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고, 사업자 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계위 등을 달

또한,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하여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무정산 구간이 설정되면, 통신사가 접속비용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 VR·AR 등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를 부담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접속통신요율은 매년 요율 별로 동일한 비율로 인하하여 왔으나, 요율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 별로 인하율을 달리 설정해 연간 최대 30%(중계접속요율)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CP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 VR·AR 등 혁신적인 신규플랫폼서비스를 부담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사 간 접속료 정산방식이 기존 무정산에서 트래픽기반 상호정산 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내 콘텐츠기업의 망사용료 부담 급증, 국내 기업 역차별논란 등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통신사 간 접속료가 연관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접속료 무정산 구간을 설정(1:1.8) 하고 중소통신사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접속요율을 인하(최대 30%) <p>「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편방안 마련 (과기부, '19.12월)</p>



리 선택

10

공공공사 자재단가에 시중물가 적용

공공공사의 시공품질 및 안전 확보의 첫발을 뚫습니다!

지난 15년간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은 약 12% 이상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공사비제도와 표준시장단가 운영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낮은 수준의 공사비가 산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 대비 약 82% 수준에 머물러 적정공사비를 위해서는 자재가격의 현실화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조달청은 공사 자재가격을 별도로 조사·결정하면서 대량구매 기준의 낮은 자재단가와 이미 수행된 실행단가를 참고했기 때문에 시중물가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가 결정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단가를 설계가격 검토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다시 공사비를 삭감함으로써 당초 설계가격 대비 약 14%의 공사비가 삭감된 상태로 발주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게다가 낮은 가격에 낙찰률까지 적용하게 되니 실구매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될 수밖에 없어 자재구매량이 적은 중소규모 현장은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경영애로가 있었습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대부분은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위탁하고, 자체발주하는 기관도 조달청 단가를 활용하거나 참고함에 따라 불합리한 조달청 자재단가가 사실상 공공공사 전체에 적용되어 국가시설물의 시공품질저하와 안전관리부실의 원인이었으며 여러 가지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추진단은 건의내용을 검토한 바, 건설업체의 실제 자재구매가격과 조달청의 대량구매가격 간에 격차(조달청 가격이 훨씬 낮음)가 있음에도 모든 공공공사 자재단가에 조달청 가격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기재부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과도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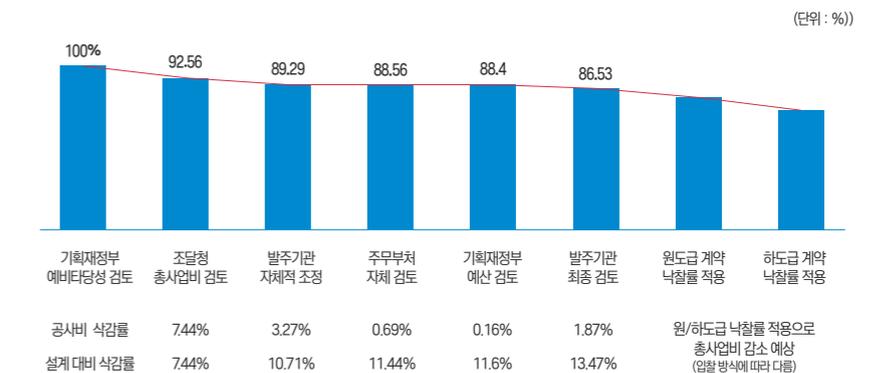
되게 조달청이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하도록 조달청과 협의했습니다. 조달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6일 발표하였습니다. 즉, 종전에 기초 조사가격에 적용률 및 가격변동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적용률 및 가격변동률을 폐지하고 시중물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공공공사 자재단가가 점차 현실화됨으로써 시공품질저하와 안전관리부실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시설물의 총생애비용 절감과 시공사의 경영부담 완화에도 기여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시공 안전관리 부실 방지 및 국가시설물의 총생애비용 절감과 시공사의 경영부담 완화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자재 가격조사(시설공사 원가검토에 기초·반복 사용되는 공공공사 자재 품목에 대한 가격변동 조사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에 적용률 및 가격변동률을 통하여 가격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적용률 및 가격변동률을 폐지하고,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도 개선 <p>「시설자재 가격조사 제도개선안」 마련 (조달청, '19.12월)</p>

<단계별 총사업비 산정 프로세스>



※ 자료: 김상범 외, 공사비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연구, 대한토목학회 공공정책위원회, 2016. 7
* 주: 2010~2012 조달청 발주공사 24개 사업 공사비검토단계별 조정추이(조달청, 2013) 재구성



11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및 부대시설 설치 허용

체험학습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가 용이해집니다.

최근 농업분야는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에서 제조·가공·체험·판매 등 2·3차 산업이 복합된 6차 산업* 등의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6차 산업 :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의 2차 산업과 체험관광 등의 서비스 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

농촌 체험학습 사업의 경우 대도시 인근이 유리하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농촌체험·판매의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설치 근거가 불명확하여 부대시설 설치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즉,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및 이와 관련된 체험·실습 등을 위한 시설'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농촌 체험·실습에 필수적인 부대시설 설치를 유연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사례 : A 농장 생산+가공+체험을 하는 6차 산업 인증사업자로 생산지인 농업진흥구역 내 농장의 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체험프로그램의 주 대상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등으로 어린이들의 위생 및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이 필요한 상황

이에 추진단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농업활동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프로그램 활성화와 체험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상 체험·실습과 연계된 부대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시설에서 체험관, 휴



양시설, 판매시설 등에 더하여 세면장 등 필수 부대시설도 허용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사항에 따라 농업분야에서 다양한 신산업 분야와 융합되어 부가가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농업분야에서 다양한 신산업 분야와 융합되어 부가가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나목4) 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장'은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및 이와 관련된 체험·실습 등을 위한 시설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장'은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및 지역특산물과 관련된 체험·실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해당 된다고 보며, 이 시설의 허용 규모와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라면 화장실, 세면장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 가능 같은 별표 제5호마목13)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시설로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 관련 시설'을 규정하면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체험관, 휴양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 <p>「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국토부, '19.2월)</p>



12

공장내 가스저장소의 신설 및 변경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외

공장 내 부대시설로서의 가스저장소 신설 및 변경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사업장내 고압가스 저장소의 신·증설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다른 사전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들은 위 법령에 따라 안전사항 항목에 대해 연 2회(정기/자율)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장능력 30톤 초과 액화가스저장소', '저장능력 3천m³를 초과하는 압축가스 저장소 신·증설' 시에는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간주하여 약 6개월이 소요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이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할 자치단체에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목적은 사고 방지 및 안전 확보이지만, 해당 시설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를 이행하고 있어 이중규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은 시황 변동에 따른 가스 저장소의 신·증설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절차의 준수를 위해 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은 반도체 산업과 같은 타이밍산업의 시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제1항에 따라 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m³ 이하인 압축가스 저장소를 제외한 저장소를 가스공급설비로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 따라 가스공급설비를 기반시설로 지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의무화



이에 추진단은 국토부와 협의하여 공장내 부대시설로서의 가스저장소 등 공공 기능이 약한 '자가소비용 가스저장소'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개선하였습니다.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규제 제거를 통해 시장 및 가격변동성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불필요한 이중규제 제거를 통해 시장 및 가격 변동성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에 유연성을 부여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내 가스저장소의 신설 및 변경시, 가스공급시설의 도시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의무화(6개월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내 부대시설로서의 가스저장소 등 공공 기능이 약한 '자가소비용 가스저장소'는 절차 간소화 및 행정부담 완화로 효율적인 기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됨(6개월 단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국토부, '19.8월)

<공장내 가스저장소의 신설 및 변경시 프로세스>

